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2 발 의 년 월 일:2022년 09월 19일 발 의 자:김혜지 의원(1명)

찬 성 자: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무성호,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심미경, 송경택, 이정숙, 이병윤, 이봉준, 이성욱, 이병윤, 이종태, 이하우, 이병원, 이종대, 최유희, 최재란, 하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43명)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예전보다 확장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세부화 및 사전 시범사업의 실시근거 및 의견수렴, 실태조사 추가함. 이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 마련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5조제 1항제1호)

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음(안 제6조1항제1호,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한"을 "위해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 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시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 공모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 할 수 있다.
- 2. 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 구청,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					
경을 조성하기 <u>위한</u>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의				
<u><신 설></u>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				
	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				
	전시설 설치사업				
<u><신 설></u>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				
	<u>업</u>				
<u><신 설></u>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u><신 설></u>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중진을 위하여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					
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내에 시					
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8조(실태조사) (생 략)

<신 설>

- 1. 시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 공모등을 통해 시범 사업을 선정하고 실시 할 수 있다.
- 2. 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 른 개별사업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실태조사) <u>①</u>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 시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 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 련 기관, 구청, 관계자 및 개인 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미첨부사유서(1호)

요 청 인 : 김혜지 의원

담 당: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예산분석관

접 수 일: 2022.08.31.

회 신 일: 2022.09.02.

내용문의: 02-2180-7955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 1. 비용발생 요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3. 미첨부 사유
-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제1항 실 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 는 관련 기관, 구청,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 렴하여 정책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제4호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2년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관련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5조제1항제1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300,000
제5조제1항제4호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141,000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 나. 추계결과= 2.120.000천원(연평균 424.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120,000천원으로 연평균 424,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전제
-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120,000천원(연평균 424,000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입	-	-	-	-	1-1	-	-
	소계(a)	-	-	-	-	S=	-
세출	민관협력사업 비용 (제5조제1항제2호)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홍보 및 교육 비용 (제5조제1항제3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신청, 공모 등 시범사업 비용 (제6조)	94,000	94,000	94,000	94,000	94,000	470,000
	실태조사 비용 (제8조)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소계(b)	424,000	424,000	424,000	424,000	424,000	2,120,000
	총비용(b-a)	424,000	424,000	424,000	424,000	424,000	2,120,000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비용 ≒ 400,000천원
 - 민관협력사업 비용
 - = 80,000천원 × 5회
- ※ 2022년 서울시 도시교통실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민관 협력사업 추진비 준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1,000,000천원
 - 홍보 및 교육 비용
 - = 200,000천원 × 5회
- ※ 2022년 서울시 도시교통실 자전거 홍보 기획 및 홍보물 제작 등(자전거도로 등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 등) 비용 준용
- 신청 및 공모 등을 통한 시범사업 ≒ 470,000천원
 - 신청 및 공모 등을 통한 시범사업 비용
 - = 94,000천원 × 5회
- ※ 2022년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모사업 비용 준용
- 실태조사 비용 ≒ 250,000천원
 - 실태조사 비용
 - = 50,000천원 × 5회
- ※ 2022년 서울시 도시교통실 실태조사비 50,000천원 준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22 02-2180-7955

e-mail: kjh0123@seoul.go.kr